

의 건 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민원대상지 구미보 휴게소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의 건으로,

청원인들은 민원대상지가 세분화 결정되는 과정에서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치 않고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입안이 이루어져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기에, 현재 고객 편의시설(음식점)도 설치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고통과 부도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상에도 민원대상지가 적법 훼손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도시과는 청원대상지의 토지적성평가 시행 기간(2006~2007)과, 주민 의견청취 지방일간신문 게재일(2007.12.26), 청원인 등의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신고일(2008.08.05), 건축사용승인일(2009.01.19), 토지형질변경 준공일(2009.01.14) 시점을 보아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면적이 적고 또한 명분이 없어 청원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입안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본 청원은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

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은 있어 보임.

이에 구미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하여 건의할 것을 의결한다.

다 음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구미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업무로, 본 민원대상지 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 차후에도 주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6. 12. .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